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	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. 11. 25-26 부산	
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		배포일시	2019. 11. 26(화) 총 2매(본문2)		
담당부서	국토교통부	주택정비과	• 과장 이재평, 서기관 박진호, 사무관 이중곤 • ☎ (044) 201-3384, 3387		
	서울특별시	주거정비과	• 과장 진경식, 팀장 함창록, 주무관 정동훈 • ☎ (02) 2133-7231, 7232	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한남3 재개발사업,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로 재산상 이익 제공, 시공과 무관한 제안사항 20여건 적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서울특별시(시장 박원순)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현행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로,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.
 - 재건축·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(11월11일~14일).
 -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, 서울시,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, 변호사, 회계사,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였다.
- 현장점검 결과,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.
 - ① 「도정법」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 수사의로
 -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,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‘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.

- 특히, 사업비·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(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)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,
- 분양가 보장,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.
- 또한,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, 「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」 위반이라고 강조했다.

*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음

② 입찰무효·재입찰 등 시정조치 통보

-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,
 -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.
 - 또한,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(「도정법」 제113조의3)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.
- 국토부 관계자는 “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.”고 하며,
- “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,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.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택정비과 박진호 서기관(☎ 044-201-3384), 이종곤 사무관(☎ 044-201-33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